

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7가단○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학교폭력
원고	●●● 외 1명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8. 11. 21.	비고	
사건개요	<p>원고 ●●● 학생에 대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과 욕설 등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으나,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여 원고인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을 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,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며, 소를 제기함.</p>		
주문	<p>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청구취지	<p>피고는 원고 ●●●에게 50,000,000원, 원고 ◎◎◎에게 2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.</p>		
판결이유	<p>○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보호감독의무 위반 부존재 -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임교사를 비롯한 학교관계자들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하며 원고 ●●●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을 감독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</p>		
결론	<p>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		